

콜마홀딩스 사규(Kolmar Regulation)

이사회규정

개정일: 2025. 5. 8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콜마홀딩스주식회사 이사회(이하 "이사회"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,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(사외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의장)

-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로 한다.
-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앞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회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 (종류)

-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정기이사회는 연 6회 개최하며, 이사회 의장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콜마홀딩스 사규(Kolmar Regulation)

이사회규정

개정일: 2025. 5. 8

제7조 (소집권자)

-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항의 소집권자가 정해진 경우,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(소집권자가 정해진 경우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본 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절차)

-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의 1주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9조 (결의방법)

-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부의사항)

-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재무구조 관련 사항 및 발행증권에 관한 사항
 - 유상증자·무상증자·자본감소
 - 주식소각
 - 자기주식 취득·처분·분할·병합
 -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 전환
 - 사채의 발행
 - 주권 관련 사채권 등 발행
 - 해외증권시장 관련 사항

콜마홀딩스 사규(Kolmar Regulation)

이사회규정

개정일: 2025. 5. 8

- 아. 주권 상장폐지 결정
- 2.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
 - 가. 신규시설투자·시설증설·공장신설(연결 자기자본 10%(자산총액 2조이상일 경우는 5%) 이상)
 - 나. 유형자산 취득·처분(연결 자산액 5%(자산총액 2조이상일 경우는 2.5%) 이상)
 - 다. 타법인 주식·사채권 취득 및 처분 (연결 자기자본 5%(자산총액 2조이상일 경우는 2.5%) 이상)
 - 라. 피출자법인 해산·부도·회생절차
- 3. 채권·채무에 관한 사항
 - 가. 중요한 차입, 보증 및 담보제공 (건당 100억원 이상)
 - 나. 채무인수·채무면제 결정
 - 다. 피보증법인 부도·파산 등
 - 라. 사채원리금 미지급(연결 자기자본 5%(자산총액 2조이상일 경우는 2.5%) 이상)
 - 마.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미지급
 - 바. 선급금 지급, 금전 가지급, 금전 대여·증권대여
- 4. 결산에 관한 사항
 - 가.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나. 주식배당
 - 다. 현금·현물(분기·중간·결산)배당
- 5. 기업경영활동 관련 사항 및 지배구 조·개편에 관한 사항
 - 가.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
 - 나. 영업양수도·임대, 합병, 분할 등
 - 다. 간이합병·소규모합병
 - 라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마.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바. 정관의 변경
 - 사. 이사회 규정 개폐
 - 아. 이사회 위원회 규정 제정/개폐
- 6. 존립에 관한 사항
 - 가. 해산사유 발생(자회사, 종속회사, 포함)
- 7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가.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 - 8. 기타 정관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
 - 9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- 2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
콜마홀딩스 사규(Kolmar Regulation)

이사회규정

개정일: 2025. 5. 8
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1조 <삭제>

제12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3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5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4장 기타

제16조 <삭제>

제17조 (사외이사에 대한 지원)

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·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한다.

제18조 (개정)

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 단,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한 바에

콜마홀딩스 사규(Kolmar Regulation)

이사회규정

개정일: 2025. 5. 8

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한 시점부터 적용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